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

제 3 판

2022. 10.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목 차

I.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개요 ········ 1
1. 종전 운영 중이었던 기관과의 관계 1
2. 신청 요건 2
3. 지정 절차 및 관리 ········ 4
J. 시경 글자 犬 근디 4
II. 운영방향 5
Ⅲ. 단계별 세부 운영지침6
1. 방문·접수6
2. 진찰7
3. 진단검사 : 전문가용 RAT, PCR 검사 7
4. 일반진료 11
5.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 11
IV. 고위험군 관리(패스트트랙) 방안 12
1. 지역사회 13
2. 요양병원 15
3. 요양시설 15
4. 정신의료기관 16
5. 정신시설 16
6. 장애인거주시설 16
V. 관련 수가 안내 ······ 17
【붙임】 19
[참고] 20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개요

1. 종전 운영 중이었던 기관과의 관계

- (명칭 일원화) '22.7.1.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명칭 일원화
- **(대상 기관)** '22.6.30. 이전에 ^①호흡기전담클리닉(보건소 설치 제외), ^②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③외래진료센터, ^④전화상담 병의원 중하나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던 의료기관
- (적용 지침) '22.7.1.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고위험군 관리 (패스트트랙) 운영지침」(이하 본 지침) 적용

< 종전 기관 및 적용 지침 >

종전 기관 명칭	종전 지침	변경 지침
호 흡 기전담 클리닉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 ·치료체계 운영지침」 제 2-1판('22.3.14.) 	 보 지침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지침」제5판('21.12)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지침」제5판('21.12.)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 기관 운영지침」제2-1판 ('22.3.14.)	• 본 지침
외래진료센터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22.4.1.)	• 본 지침
전화상담 병·의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8판 ('22.8.1.)	● 좌동 (종전 지침에 따라 전화상담 등 수행)

-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현행 지침 참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8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3판
- 그 외 코로나19 방역관리, 진료 및 치료, 먹는 치료제 처방 등에 대하여 규정한 지침

2. 신청 요건

- * 신규기관부터 적용
-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 환경과 적정 인력을 갖춘 의원, 병원*(별도 시설·장비비 지원 없음)
 - * 신규 기관의 경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 우선 신청 권고

가. 시설 기준

- ·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
- * 확진자 비대면 진료만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시설 기준 미적용

나. 인력 기준

1) 의사인력(의사 또는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이상 상근

< 의사인력 관련 안내사항 >

-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먹는 치료제 처방**은 **의과 의료기관**(치과, 한방 제외)만 가능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코로나19 관련 질환** 대면/비대면진료는 **내과계열 전문의** "를 우선 권고
- * (내과계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非코로나19 관련 질환** 대면/비대면진료는 **진료과목 제한하** 지 않음
- * 기저질환, 치과진료, 한방진료, 골절, 와상 등
- 2)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상근
- 3)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 * 환자 분류, 체온 측정, 진료 접수 등 보조업무

다. 운영 기준

1)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아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으나, 각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연번	기능	기능 수행 요건
1	• 호흡기환자 진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사(의과)가 있는 의료기관만 가능
2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 먹는 치료제 처방은 의사(의과)가 있는 의료기관만 가능 * 먹는 치료제 처방은 당초 내과계열 전문의만 가능하였으나, 의사(의과) 전체로 허용 범위 확대 (22.7.1~)
3	• 확진자 대면진료	 (코로나19 관련 질환)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 (내과계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非코로나19 관련 질환) 의과, 치과, 한의과 등 진료과목 제한하지 않음 * 기저질환, 치과진료, 한방진료, 골절, 와상 등
4	● 확진자 비대면진료	 ● (코로나19 관련 질환) 내과 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 (내과계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 (非코로나19 관련 질환) 의과, 치과, 한의과 등 진료과목 제한하지 않음 *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 등

- 2)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코로나형) 중 ①, ②, ③, ④ 기능 모두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수행하지 않을 수 있음
-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중 예산(국비) 지원으로 감염격리 시설 등을 확보한 기관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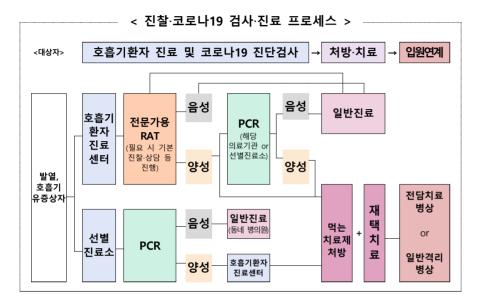
3. 지정 절차 및 관리

-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
- (지정 절차) ^①의료기관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직접 신청→ ^②관할 보건소가 심평원 시스템에 접수된 의료 기관별로 신청 요건 충족 여부 판정하여 지정
 - * 지자체의 접수·지정 절차 등은 시스템 매뉴얼 참고(중수본-34400호(2022.8.31.))
 - 신청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관 지정 취소 또는 진찰료 화수 등 조치

○ (사후 관리)

- 지정권자인 지자체(시군구)가 일차적인 사후 관리* 담당하며 지역 여건에 맞도록 센터 운영 유도
 - * 진료 환경 및 인력 운영의 적절성 등
- 복지부(심평원), 시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기본 운영방향



- **(목적)** 지역사회 안에서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를 **진료** 및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역할)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호흡기 환자 및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진찰-검사-재택치료-입원 등 수행
 - 환자 진찰 및 코로나19 진단검사(전문가용 RAT, PCR 검사)
 -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 및 먹는 치료제 처방
 - 고위험군의 경우 검사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하고, 의사 판단 및 환자 동의에 따라 신속하게 입원과 연계
- (관리) 직원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예방 수칙 준수(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 단계별 세부 운영지침

1. 방문 · 접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or.kr) 등을 통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 공개
- (의료기관 방문) 코로나19 의심환자(확진자 포함)는 KF94 이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대중교통 이용・밀접접촉·대화 등 자제 (도보·개인차량 권장)
 - 확진자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방문 즉시 의료진에 통보
- (접수) 입구에 지정의료기관 운영 안내문·방문자 주의사항(배너, 포스터 등)을 설치하고, [®]환자의 코로나19 확진자 여부 및 고위험군 여부, [®] 해온 측정·호흡기증상 유무 및 [®]한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
 - * 접수·수납단계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해 투명가림막 등 설치가 권장되며 접수직원은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필요
 - ** 환자는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가급적 혼잡한 공간을 피하고 동선을 최소화하여 이동하되, 다른 장소 경유 금지
- **(대기)** 환자 대기공간은 환기*(자연 환기 또는 음압) 및 환자 간 일정 거리(1미터 이상) 유지 필요
- 환자는 꼭 필요한 경우(검체채취 등)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 착용한 상태를 유지
- * 질병관리청「슬기로운 환기 지침(가이드라인)」('21.10.27.), 중수본 '알기 쉬운 감염에방관리지침(지역사회 의료기관 외래 진료 중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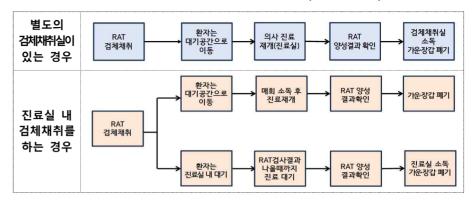
2. 진찰

- (진찰) 일반적인 의료기관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의료인·직원은 진찰 시 KP94 이상 마스크 착용하고 일회용 장갑 또는 손소독제 사용
 - ▶ 의료기관 근무인력의 마스크 착용 준수사항
 - 마스크는 업무 중 벗지 않고 착용한 상태를 유지한다
 - 마스크가 젖었거나 오염된 경우(환자의 비말이 묻는 등) 즉시 교체한다.
 - 업무 종료 후에는 의료기관을 나오기 전에 마스크를 벗어 폐기한다.
- (후속 절차) 진찰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
 - 코로나19 의심 증상 판단되는 경우 : 3. 진단검사 실시
 - 코로나19 증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4. 일반진료 실시
- 3. 진단검사: 전문가용 RAT, PCR 검사

(1) 전문가용 RAT

- (전문가용 RAT 대상) ^①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
 - ^②의사의 진찰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 판단되는 자,
 - ^③의사의 판단에 따른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22.8.2.부터 적용)
 - *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안내 (보험급여과-3877호, 2022.7.29.)
- (검체채취·검사) 검체채취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하거나(권장사항) 환기·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 검체채취 가능*
 - 검체채취 시 의료진은 **4종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전문가용 RAT 결과가 **양성**이 나온 경우 가운·장갑 **폐기**가 **원칙**
 - * 마스크(KF94 이상), 안면보호구(고글, 페이스쉴드 등), 일회용 긴팔가운 (비닐 또는 부직포 가운). 일회용 장갑(비닐 또는 라텍스 장갑)

< 검체채취 장소에 따른 검사·진료 절차(양성인 경우) >



- (후속 절차) 전문가용 RAT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가. 전문가용 RAT 결과가 음성인 경우 : 검사 종료
 - 4. 일반진료 실시
 - 나. 전문가용 RAT 결과가 양성인 경우 :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인정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전문가용 RAT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진료 및 치료) 5.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 실시
 - **(감염병발생 신고)** 보건소로 즉시 보고(유선, 카톡 등) 및 코로나19 정보시스템에 신고
 - 다. RAT 양성시 추가 PCR 검사*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의사 판단 시 PCR 검사 가능
 - 자체 PCR 검체채취 및 진단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에서 수행

-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체 PCR 검체채취가 어려운 경우 검사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전문가용 RAT 양성 소견서 발부, PCR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 방문 안내
- * 전문가용 RAT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음 → 추후 PCR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확진환자 신고·보고

< 전문가용 RAT 양성이 나온 경우 대응 요령 >

- 전문가용 RAT 양성자에게 확진 사실과 격리 의무 발생 및 재택치료 주의 사항 등을 안내·지도, 안내문 배부(서식1 활용)
 - * 격리통지는 보건소가 수행
- ② 환자 진료 및 처방
 - *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 가급적 보호자를 통해 처방 의약품 등 수령 권고
- ❸ 추가 PCR 검사 필요 여부 진단
- ① 보건소로 신고(카톡, 유선 등 핫라인)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신고(추가 PCR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 ⑤ 양성 환자가 머무른 구역 및 호흡기 비밀이 발생하여 오염된 구역의 표면 소독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자연환기 또는 기계식 환기(음압기)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실 의자, 진료실 의자(또는 침상), 검체채취실 등 집기 표면 및 오염이 우려되는 표면을 소독제로 소독
- ※ 양성여부와 상관없이 매회 환자마다 체온계, 청진기 등 환자 진료 도구는 사용 후 소독

[2] PCR 검사

- (후속 절차) PCR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가.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 4. 일반진료 실시
 - 나.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인정
 - (진료 및 치료) 5.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 실시
 - **(감염병발생 신고)** 보건소로 즉시 보고(유선, 카톡 등) 및 코로나19 정보시스템에 신고

▶ (참고)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본인부담 없이 PCR검사 가능(진찰료 본인부담(5천원, 의원) 발생 가능)

*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기관별 진단검사 대상 및 비용>

구	분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	•고위험균 등 우선순위 대상 [®] 만 60세이상 고령자 ²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³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산흥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료기관 내 의사소경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 만 60세이상 고령자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좌동
	비용	무료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 무료 * 단 진찰료 발생 가능 •검사희망자 6~7만원(전액본인부담) *해2출국용 등 진단서 발급 목적의 검사는 비급여	좌동
신속	검사 대상	-	검사 희망자	좌동
신속 항원 검사 *전문 가용	비용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5천원의원급 기준 잔찰비 발생 +진단감사비 무료 •(확진자접촉) 무증상자("22.8.2~) - 5천원의원급 기준 잔찰비 발생 +진단감사비 무료	좌동

(3) 전문가용 RAT 또는 PCR 검사 후 안내사항

- **(격리 및 재택치료)** 의료기관으로부터 양성 및 주의사항 안내를 받은 날부터 격리 및 재택치료 개시됨을 안내 (안내문 배부, 서식1)
- (귀가방법) RAT 또는 PCR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 후 귀가 시 안내사항
 - 가. RAT 또는 PCR 검사를 한 환자는 자차, (방역)택시 이용(대중교통 이용자제)
 - 나. 마스크(KF94 이상) 착용, 타인과 밀접접촉 최소화, 대화금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귀가

4. 일반진료

- (진료 대상) ^①진찰 결과 코로나19 증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② 전문가용 RAT 결과가 음성인 경우, ^③전문가용 RAT 결과가 양성 이었지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 **(진료 내용) 일반적인 진료** (예시 : 감기약 처방)

5.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

-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8판)」참고
- (진료 대상) 전문가용 RAT 또는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진료 내용)** 의료기관별 진료 가능한 질환에 대하여 **진료**(대면, 비대면) 실시
 - * 대면진료는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을 실시하며. 코로나19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그 외 치과진료, 한방진료, 골절, 와상 등도 가능
 - 의사의 판단에 따라 먹는 치료제 및 발열·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의약품 등 처방 가능
 - * 고위험군의 경우 1일 이내 검사부터 처방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를 위해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즉시 먹는 치료제 처방 권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7-2판)」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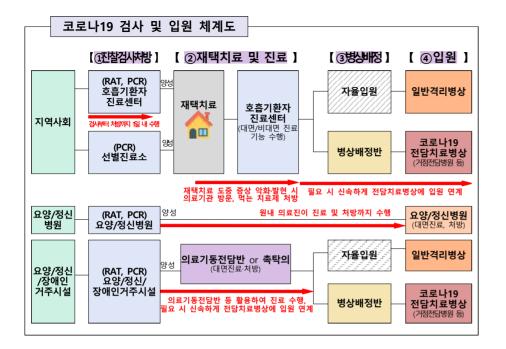
IV

고위험군 관리(패스트트랙) 방안

- ◆ 기존 진단검사, 처방, 입원연계 체계를 준용하되, 고위험군 대상 신속한 입원 연계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및 취약시설 대응 방안을 종합하여 안내
- □ (추진배경)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증대
- □ (기본방향) 진료·처방 및 입원 연계 등을 신속하게 수행(패스트트랙)
-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 진행
- 병·의원 의사 판단 및 환자 동의에 따라 신속하게 입원과 연계
- □ (적용대상) 코로나19 확진환자로서 고위험군으로 판별된 자

고위험군

-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자
- ① 60세 이상 고연령층
- ② (면역저하자) 암환자, 면역결핍증(HIV 감염 등) 환자 및 면역억제제 치료 환자, 장기이식자, 그 외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사망 등 위험이 높은 자
- ③ (기저질환자)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BMI) 30kg/m² 이상, 신경발달장애 중 1개 이상 보유한 자
- ④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시설, 장애인거주시설
- ☐ (절차) 진단검사(호흡기환자진료센터·선별진료소), 환자 진료(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통해 고위험군 판별 및 관리하고,
 -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기관 내** 또는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활용 하여 고위험군 관리
- □ (향후 추진방향) 대면진료 중심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시 원스톱 진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진료-치료제 처방까지 신속하게 이루어 지도록 관리



1. 지역사회

- ※ 고위험군이 아닌 재택치료 대상자는 증상 발현·악화에 따른 일반적 절차에 따라 병상 배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7-2판)」 참조
- (사전 준비사항) 지역 내 신속히 활용 가능한 의료·행정자원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보건소, 재택치료추진단, 시·도119 등 비상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고, 지역별 거점전담병원 및 일반격리 병상 현황을 상시 공유
 - 지역별로 **신속하게 이송 가능한 복수의 의료기관** 및 **다양한** 이송수단(보건소, 119구급대 등)을 **사전 지정·확보**
 - 야간 및 공휴일에도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 등 운영 현황 파악

○ 코로나19 진단검사

- (PCR 검사)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PCR 검사 이후 확진 시 신속한 대면진료 가능하도록 확진자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 안내* 강화
- * ① (귀가 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후 귀가 시 지역 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명단, 유의사항 등 담은 안내문 제공 \rightarrow <u>【서식5】 참고</u>
- ② (확진 통보 시) 확진자 격리통지 문자에 대면진료 사항 안내
- · 특히, 사전 전자문진 시 만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지역 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명단과 유의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활용·배포

격리통자 문자 안내 문구 (예시)

- ◆ 격리기간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나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원스톱진료기관" 검색)
- (전문가용 RAT)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①진단검사 통한 양성 판정 직후 의사의 문진을 통하여 고위험군에 포함
- (고위험군 진료·치료) 재택치료 도중 발열 등 중상 발현·악화 시 대면·비대면진료 실시
 - **대면진료 기능**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방문 시 **먹는 치료제** 처방,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병상 입원 의뢰
 - 비대면진료 기능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 전화상담 등 수행,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병상 입원 의뢰
- (신속 입원연계) 재택치료 입원절차에 준하여 즉시 사전 확보된 의료기관으로 입원 의뢰 및 이송 조치
 - 재택치료추진단 및 시·도 배정반을 통하여 **코로나19 전담치료** 병상으로 배정 및 입원 조치

2. 요양병원

- (진단검사) 요양병원 내 의료인이 PCR 또는 전문가용 RAT 실시
- (환자분류) 주치의가 확진환자의 중증도,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워내치료 또는 전원 여부 결정
- **(환자치료)**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방대본)에 따라 **치료제** 투여 및 기저질환 치료
 - * 보건소는 요양병원 확진자 발생 시 1일 내에 치료제 공급 가능하도록 조치
- (환자전원) 초기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 원내치료 중 중상이 악화된 환자는 신속히 코로나19 전담치료 병상 등에 전원 조치

3. 요양시설

- (코로나19 진단검사) 요양시설 내 간호인력 활용 PCR 검사 실시
- (고위험군 치료) 요양시설 내에서 대면진료 및 비대면진료 실시
- (대면진료)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을 통해 시설 내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실시
-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일반의료체계 활용 병행

○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 (목적) '찾아가는 대면진료' 강화로 요양시설 내 확진자의 중증화 및 사망 방지
- (구성) 의사 1명,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1명 이상으로 구성
- (현황) 223개 의료기관(271개 팀) 지정·운영 중
- (기간) 지정일로부터 12.31일까지(추후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연장 가능)
- (비대면진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활용
- (신속 입원연계) 중상 발현·악화 시 의료진 판단 및 환자 동의 하에 병상배정에 신속히 연계하여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등에 입원토록 조치

4. 정신의료기관

- (진단검사) 정신병원 내 의료인이 PCR 또는 전문가용 RAT 실시
- (환자분류) 주치의가 확진환자의 중증도,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원내치료 또는 전원 여부 결정
- **(환자치료)**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방대본)에 따라 **치료제** 투여 및 **기저질환 치료**
 - * 보건소는 정신병원 확진자 발생 시 1일 내에 치료제 공급 가능하도록 조치
- (환자전원) 초기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 원내치료 중 중상이 악화된 환자는 신속히 코로나19 전담치료 병상 등에 전원 조치

5. 정신시설

- (코로나19 진단검사) 정신시설 내 간호인력 활용 PCR 검사 실시
- (고위험군 치료) 정신시설 내에서 대면진료 및 비대면진료 실시
 - (대면진료) '정신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을 통해 시설 내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실시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일반의료체계 활용 병행

○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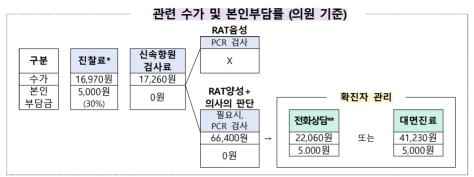
- (목적) '찾아가는 대면진료' 강화로 정신시설 내 확진자의 중증화 및 사망 방지
- (구성) 의사 1명,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1명 이상으로 구성
- (현황) 28개 의료기관(30개 팀) 지정·운영 중
- (기간) 지정일로부터 12.31일까지(추후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연장 가능)
- (비대면진료)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활용
- (신속 입원연계) 증상 발현·악화 시 의료진 판단 및 환자 동의 하에 병상배정에 신속히 연계하여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등에 입원토록 조치

6. 장애인거주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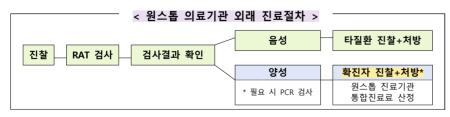
- (진단검사) 장애인거주시설 내 간호인력 등을 활용하여 RAT 실시
- (감염자 관리) 거주시설 내 촉탁의를 활용하여 대면진료 실시
- * 촉탁의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의료기관 활용
- **(신속 입원연계)** 증상 발현·악화 시 신속한 병상배정을 통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등에 입원하도록 조치

V

관련 수가 안내



- * 의원 초진 진찰료 적용 (환자가 동네 의원을 자주 이용해도 질환이 다르면 초진 진찰료 적용)
- ** (재택치료 전화상담) 진찰료 및 전화상담관리료 산정(의원급 초진 기준 금액)
- (진찰) 진찰료는 현행 수가체계 및 본인부담률 그대로 적용
 - ※ 신속항원검사 시에 발생한 진찰료는 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있으므로 수납(관련: 보험급여과-1263(2022.3.13.))
- (진단검사)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수가 및 본인부담률은 현재 건강 보험 수가로 산정하되 환자 본인부담률 없는 형태로 적용
 - * RAT 검사는 요양기관 의사 1인당 일 100회까지 가능하나, 원스톱 진료기관의 경우 의사 1인당 RAT 검사 가능 횟수 제한 없음(7.1~)
 - (확진 당일)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RAT 확진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확진자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12,130원, 의원)' 산정



※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814호, 2022.7.27.) 참고

- (일반진료)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자에 대한 감기약 처방 등 일반적인 진료는 현행 수가체계 그대로 적용
- **(확진자진료)** 확진자 대상으로 **전화상담·처방** 또는 대면진료 실시
 - (전화상담) 재택치료 환자는 진찰료 및 전화상담관리료를 산정
 - * (의원급 초진 기준 금액) 진찰료 16,970원, 전화상담관리료 5,090원
 - ** 의료상담센터의 경우 야간·공휴일 등에 대해 가산 수가 적용
 - (대면진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로 대면 진료 시 진찰료 및 대면진료관리료*(24,260원, 의원) 산정
 - * 의사 1인당 일 100명까지 산정 가능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당일, 대면진료관리료 산정 불가
- ※ 수가 및 본인부담률은 변동 가능하며(한시 운영), 이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등에 따라 산정

붙임1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규·변경·취소 신청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규/변경/취소) 신청서									
신청종류		□ 신규		변경		취소			
(취소 신청 시)	운영 종료일			9999.	12. 3	1.			
	의료기관명	००० छ :	일	요양기	기호		99	999999	9
	진료 유형	호흡기환자 진료		나19 사	치료	제 ㅊ	방	확진지 대면	ト 진료 비대면
의료기관 (변경 신청 시 변경한 상태를	수행여부		신속형 PCR	항원 □ □					
반영하여 재작성)	주소	C	01/0	007 C	000	ο번ᢓ	<i>⊒ o</i>	0	
	진료예약		유선전화번호) * '010-' 불가 (인			(인터넷/모바일) <i>홈페이지, 똑닥, 네이버플레이스</i> :			베이스 등
	의료기관 종류	[] 의원,	[]	치과의원] 종합병				[],	병원,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시작일	9999. 01.	01.	종료	.일			<u> </u>	
		료센터 체크리스 상태를 반영하여				예		아	니오
		독·환기 등 예방 读춘 기관입니다.		을 준수할	발				
2) 의사인력	1명, 간호인력	1명, 진료 보조 을 갖추고 있습!	도 등 15	명 이상이	ı				
(의료기관) 성명: 소속부서: / 직책: 전화번호:									
					Έ	<u> </u>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군·구	청장 구	하							

* 확진자 비대면진료만을 수행하는 기관은 체크리스트 1)번의 시설기준 갖출 필요 없으나, 이후 확진자 비대면진료 외 기능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청 및 1)번의 시설기준 충족 필요

참고1

의료기관 감염병환자 신고체계

1. 확진환자 신고

- 확진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즉시 신고(유선, 기타 핫라인 등 방법)하고,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 EMR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주소 등 환자의 인적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됨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인 경우 '비고'란에 "전문가용 RAT 양성" 또는 "응급선별검사 양성" 입력 권고
- ▶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음
- ※ 추후 PCR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확진환자 신고·보고

2. 확진환자 사망 신고

- 확진환자가 사망한 경우 최초 인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 입력
 - **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사망보고**를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모두 입력



[발생 및 사망 신고·보고]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환자감시'를 통해 보고

참고2

감염병 발생 신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0. 9. 11.> 간연병 반생 시구서

		3 2 7 1		
※ 뒤쪽의 선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	기 바라며, []		합니다. (앞쪽)
<u> 수신자:</u>			보건소장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외국	인)등록번호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성별 []남 []여	
전화번호		휴대전화변	변호	
주소				
[]거주	지 불명 []신원 미상	직업		
[감염병명	명]			
제1급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뱅 []탄저 []보툴리눔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리열 독소증	[]라싸열 []두창 []야토병) []중동호흡기증후군([]크리미안콩고출혈열 []페스트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	[]수두(水痘) []홍역(紅痰 []파라티푸스 []세균성이: []A형간염 []백일해(译 []풍진(風疹,[]선천성 풍진 []후 []b형혜모필루스인플루엔자 []성홍열 []반코마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급	질 [日咳) 천성 풍진) 신내성황색포.	[]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감임 []유행성이하선염(流 []폴리오 []폐렴구균 감염증 도알균(VRSA) 감염증 []E형간염	行性耳下腺炎) []수막구균 감염증
제3급	[]파상풍(破傷風) []B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 []발진열(發疹熱) []쯔쯔가무-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황열 []댕기열 []라임병 []진드기매:	라증 시증 출혈열(腎症佞 크로이츠펠트- 개뇌염		
[감염병	발생정보]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신고일	년 월 일
하지거시	결과 [. []74.L.n.	실시 입원여부 [뇌ㅇ]외래 []입원 []그 밖의
환자 등 위 비고(특이 사망여부	분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사항) []생존 []사망			
	료기관 등]			
요양기관년 주소 <u>진단 의시</u> [보건소		날인)	요양기관명 전화번호 신고기관장 성명	
국적(외국	² 인만 해당합니다)			
환자의 소	속기관명 [[지역 []국내	환자의 소속기 루기간:	관 주소 ~ / 입국	일: 년 월 일)
	[] ¬ ¬ (¬ / 10 · / ^]	CORPORA	/ 납ጎ	ㄹ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신고방법

- 1.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린 후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신고한 감염병환자 중 확진검사결과 또는 환자 등 분류정보가 변경되거나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관할 보건소로 통보해야 합니다.
- 2. 감염병에 따라 환자상태 및 감염병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신고서와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신고 해야 하며, 감염병 발생을 신고한 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만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4. 제2급감염병 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급감염병 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
- 5.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으로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6.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내 감염병웹신고]을 통해 신고합니다.
- 7. 관할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신고 받은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이전 보고합니다.

작성방법

「수신자」해당되는 수신자에 √표하고, 수신자가 보건소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보건소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

[환자의 인적사항]

- (1) 성명: 만 19세 이하인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과 보호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감염병명] 해당하는 감염병명에 √ 표를 하며,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증상 및 정후를 적습니다.

[감염병 발생정보]

- (1) 발병일: 환자의 증상이 시작된 날짜를 적습니다(병원체보유자의 경우에는 발병일이 없으므로 "0000-00-00"을 적습니다).
- (2) 진단일: 신고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감염병으로 처음 진단한 날짜를 적습니다.
- (3) 신고일: 신고의료기관 등에서 관할 보건소로 처음 신고한 날짜를 적습니다(팩스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팩스 송신일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입력일을 적습니다).
- (4) 확진검사결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5) 환자 등 분류: 검사결과 해당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밖의 경우"란에 √표를 합니다.
- (6) 사망여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사망"란에 √표를 하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의료기관 등]

- (1) 신고인이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요양기관 정보,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성명 및 의료기관장의 성명을 적고, 신고인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소속된 기관의 주소·전화번호와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성명 및 소속기관장의 성명을 적습니다.
- (2)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앙기관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요양기관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기관장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보건소 보고정보]

- (1) 환자의 소속기관명 및 주소: 환자가 소속된 직장(사업장), 학교(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포함합니다) 및 군부대 등의 기관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 (2)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만 본인의 국적을 적습니다.
- (3) 추정 감염지역: 국외 체류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국외"란에 √표를 하고, 국가명(체류국가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명을 적습니다), 체류기간 및 입국일자를 적습니다.

참고3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0, 9, 11.> 질 병 보 건 통 합 관 리 시 스 템 (http://is.cdc.go.kr)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 귀득의	신고영합 및 직성영합에 관한 한다	II를 되고 걱정이지기 마다	4, []	에는 에당되는 굿에 \	프를 입어나	r. (요속)
수신자:	[]질병관리청장	[]		보건소장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	(외국인)등록번호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성별	[]남 []여		
전화번호						
주소						
[]거주지	불명 []신원 미상		직업			
[감염병명	명]					
	[]에볼라바이러스병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제1급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AII II	[]신종감염병증후군(증성	낭 및 징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중동호흡기증후	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검	. — -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수두(水痘)]장티푸스
	[]파라티푸스					
	1	[]백일해(百日咳)				
제2급	[] 풍진(風疹, [] 선천성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인	= :]폐렴구균 감염증]한센병
	[]성홍열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파상풍(破傷風)]일본뇌염]C형간염
	[]말라리아				-	
	[]발진열(發疹熱)]렙토스피라증	l]브루셀라증
제3급		[]신증후군출혈열(1				
	[]크로이츠펠트-야콥병(1011 . = . 0 0
		[]]뎅기열				
	[]라임병]지군구니야열
Luniole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지카바이러스 김		S . I = I
	인] ※ (나)(다)(라)에는 (:	가)와의 직접적·의약·	석 인-	바관계가 명확한 것	만을 석합	하나.
(가) 직	십사인 나)의 원인			발병부터 —		
_ , , , ,	F)의 원인 F)의 원인			사망까지의		
	f)의 권인 h)의 원인			기간		
, .	D의 권인 (라)까지의 사망 원인 외의	이 그 바이 시ᅰ 사하				
	구요 소견	리 그 뛰러 전세 경칭		사망일		
	ㅜ표 또선 는 검안)의 주요 소견			사이크		
	<u> </u>					
요양기관				요양기관명		
주소	<u></u>			전화번호		
진단 의시	ト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고기관장 성명		
22 -		(10 20)			ALTI/00/	:\ E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신고방법

- 1. 제1급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린 후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2급감염병환자 및 제3급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감염병에 따라 환자상태 및 감염병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제2급감염병 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급감염병 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
- 4.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신고서와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신고 해야 하며, 감염병 발생을 신고한 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만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작성방법

[수신자] 해당되는 수신자에 √표를 하고, 수신자가 보건소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보건소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

[환자의 인적사항]

- (1) 성명: 만 19세 이하인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과 보호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을 이용한 사망신고의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신고서에 기재된 환자의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감염병명**] 해당하는 감염병명에 √표를 하며,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증상 및 징후를 적습니다.

[신고의료기관 등]

- (1) 신고인이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요양기관 정보,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성명 및 의료기관장의 성명을 적고, 신고인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소속된 기관의 주소·전화번호와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성명 및 소속기관장의 성명을 적습니다.
- (2)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요양기관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기관장 성 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참고4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 · 처방 의료기관 절차 안내

□ 재택치료 체계

◈ 재택치료자는 필요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 비대면) 및 의료상담센터(비대면) 등을 통한 신속한 진료 실시



- **재택치료자는** 자택에서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u>호흡기</u> **환자진료센터 및 의료상담센터 등에서 전화 상담**을 받고 **필요시 처방 실시**
 - ※ (약 조제·전달)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대리인 또는 환자 본인이 수령하거나, 전달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 전달 가능. 필요 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동네 약국(먹는 치료제는 지정 담당약국)에 처방전 전송 가능(원본 불필요)
 -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
 - (빠른 유행확산) 델타 대비 2~3배 높은 전파력으로 향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 예상
 - * 우리나라와 유행상황이 유사한 선행국가(호주,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오미크 론 출현 이전 정점보다 12.6배~47.2배 환자 발생
 - (경증환자 위주 발생) 상기도 감염이 주가 되고 폐렴 진행이 적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라 무증상·경증환자 다수 발생 예상
 - 델타 변이 대비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은 1/3, 치명률**은 1/3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질병청, 2.2.)
 - * (델타변이) 40대 0.5%, 50대 1.5%, 60대 3.1%, 70대 8.1%, 80대 이상 16.8% (오미크론) 40대 0.1%, 50대 0.0%, 60대 0.3%, 70대 3.6%, 80대 이상 9.3%
 - ** 오미크론 치명률 0.15%, 델타 치명률 0.7% 홍역 치명률 0.1~0.2% 독감 치명률 0.1%

□ 전화상담·처방 주요 내용

- (내용) 자택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가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전화** 연락 등이 있는 경우 의료 상담 및 필요시 의약품 처방
- (방식)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처방 요청 연락을 하면 의료 기관과 상의하여 가능한 시간에 전화 상담·처방(환자→의사)
- **(수가) 진찰료의 일반원칙에** 따라 **1일 1회 산정** 가능

<전화 상담·처방형 수가(초진 기준)>

종별	진찰료	전화상담관리료
의원	16,970	5,090
병원	16,370	4,910

* 야간, 공휴,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참고5

전화 상담·처방 세부 절차

- ① (진료 접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원기록, 확진자 정보 등 조회
 - DUR을 통해 확진 여부 확인*(2.11부터 가능), 코로나 확진자 특정내역 구분코드 입력
 - *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환자 본인에게 구두 등으로 확인

<유의사항>

-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경우, **진료를 요청한 환자**가 <u>원활히</u>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 요청 및 다른 환자 진료 종료 후 의사와 환자를 연결
- 환자와 의료기관이 상의하여 가능한 시간에 전화 상담을 진행
- 우선 통화를 종료한 후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전화(Call-back)
- ② (문진·처방)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증상, 기저질환, 약 복용력 등 상담 및 필요시 처방
 -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 ③ (필요시 처방전 발급)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모든 동네약국(먹 는치료제인 경우 시군구 지정약국*)에 처방전** 전송
 - * 먹는치료제(라게브리오)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의 명단은 <u>건강보험심사</u> <u>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u> '전화 상담·처방 참여 의료기관 등' 팝업창 에서 확인 가능
 - ** 처방전에 확진자 여부 및 환자 전화번호 포함,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 등에 활용
- ④ (급여비 청구) 확진자 정보를 포함한 명세서를 심평원에 청구
- ⑤ (기타)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참고6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처방·조제 절차 [의료기관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진료 절차 > 진단검사 진찰 진료·처방 모든 약국 (RAT) 기본 일반진료 또는 전문가용 양성 진찰상담 먹는 치료제 처방 먹는치료제 신속항원검사 담당약국'

-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담당약국에서만 조제·전달이 가능하며, 담당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에서 확인 가능
- ① (진료)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또는 증상 완화를 위한 의약품 투약 필요여부 판단
 - 먹는 치료제*의 경우, 병용금기 의약품 투약여부 확인 철저(DUR)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7-2판)」참고
- ② (처방) 투약 필요시 환자에게 복용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 약국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 송부*
 - * 먹는 치료제의 경우 담당약국을 확인(hira.or.kr)하여 해당 약국에 송부하고, 처방 후 환자관리정보시스템(HIRA)에 투약 보고
 - 처방전에 확진자(RAT 양성) 여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코로나19 질환에 따른 처방인 경우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코드 기재
 - * 코로나19 질환 및 타 질환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 분리하여 작성
- ③ (전달)약국에서 환자에게 복약지도(비대면 유선 가능) 및 의약품 전달*
 - * 약사는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항상 착용하며, 필요시 일회용 장갑, 안면 보호구 등 착용
- 환자가 직접 대면 수령 시 「코로나19 관련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의약품 전달
- ※ <u>먹는 치료제를 처방시</u> 투약기간 및 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시 전화 상담 요청, 필요시 대면진료 등 **유의사항 안내 철저**
- 투약 중지시, **잔여 치료제**는 격리해제 후 보건소·약국에 반납 안내
- *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아, 의사의 진단처방 없이 타인이 투약하는 것은 위험함을 설명안내

서식1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서

요양기관명칭 :

요양기관기호 :

개설자(대표자):

지정일: ... 부터

위 기관을 호흡기·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환자 안내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환자 안내문



우리 (의료기관명)은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확진자에 대한 전화상담 업무, 재택치료자에 대한 코로나19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이 가능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입니다.

귀하는 (월일시 분)에 실시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2022년 3월 14자로 변경된 코로나19 확진 환자 분류기준에 따라 별도의 **유전자 검출(PCR)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절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정확한 격리기간과 재택치료 방법,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 및 치료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격리기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 안내

재택치료 중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비대면 진료) 및 의료상담센터(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료 및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면 진료를 위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 도보,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알림>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시 자세한 행동 요령은 빠른 시일내에 지자체(보건소)에서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s://c11.kr/wpv5) 또는 QR코드(우측상단)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치료제 처방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① 만60세 이상이거나 ② 면역저하자, ③ 만12세 이상이고 다음 기저질환 을 하나 이상 가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 상담을 통해 처방 가능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처방 가능)

*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 ▲신경 발달장애

야간진료가 필요한 경우

야간 상담·처방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시

비상상황 및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119에 연락하시고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 코로나19 환자 이용 가능 의료기관 안내

※ 지자체별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의료기관을 안내

☑ ○○시 재택치료자 전화상담·처방 가능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명	위치	운영시간	연락가능번호

☑ ○○시 재택치료자 외래진료 가능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명	위치	운영시간	연락가능번호

☑ ○○시 재택치료자 24시간(야간) 의료상담센터

의료기관명	위치	운영시간	연락가능번호



개인정보 작성 요청문

* 의료기관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한 서식임

코로나 19 확진 신고 관련 개인정보 수집 협조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 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 의료기관은 즉시 확진환자 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 19 확진자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코로나 19 환자 등록 및 배정, 격리기간 환자 관리 및 격리 물품 전달, 의약품 처방, 생활지원금 지급 등에 활용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 환자 기재사항 -

- 1. 성명 :
- 2. 주민번호 :
- 3. 휴대폰번호 :
- 4. 거주지 상세주소:
- 5. 기저질환 :

서식4

재택치료자용 생활안내문(예시)

* 각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한 서식임

재택치료자용 생활안내문(예시)

① 이웃음 위해 이렇게 하세요.

- **재택치료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격리해제기간 동안 자택에 만 계세요.
 - 생필품 등은 **온라인으로 우선 구매**하세요.
 - 대면 진료 필요시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도보나 개인차량(본인 운전 가능),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 진료가 끝난 후 또는 처방약을 수령한 후에는 즉시 귀가합니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환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세요
 - 1) **동거인은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 2) 음성결과 확인 이후에도 외출을 자제하시고, 출근·등교 등과 같은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②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③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 3)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자가검사, 증상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등)
 - 4)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평소 이용하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되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세요.

② 다른 가족을 위해 집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 재택치료자는 독방을 사용하고, 방에서 나올 때 KF94(또는 동급)마스크를 반드시 쓰세요.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 식사는 치료기간 동안 혼자 드세요.
- 방문고리, 전등 스위치 등을 매일 한 번 이상 소독 티슈로 닦으세요.
- 밥그릇 등 식기, 수건, 침대, 컴퓨터는 따로 쓰세요.
- 가족 모두 알코올 소독제나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소독하세요.

③ 스트레스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 불안해하지 않기 : 코로나19에 걸려도 대부분 집에서 잘 쉬면 크게 고생하지 않고 일주일 내에 낫습니다.
- 가장 좋은 치료법 : 잘 쉬기, 물 많이 마시기, 아프면 진통제 먹기
-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기 : 충분히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매일 샤워하기, 자주 크게 숨을 쉬고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 꾸준히 하기, 술 마시지 않기

○ 마음은 가까이 :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연락하기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다음 상황이라면 대면 비대면 진료를 받으세요.

- 본인이나 확진된 가족이 상태가 나빠지는지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만성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환자가 발열, 기침, 온몸에 근육통이 생겼을 때
- 증상이 더 심해지는지 잘 살펴보고. 기다려도 아래 증상이 조절되지 않음 때
- ☑ 발열, 오한, 기침, 목이 따가움, 코막힘, 콧물, 근육통, 두통, 피곤함
- ☑ 맛을 못 느끼거나, 냄새를 맡지 못함
- ☑ 메스껍고 토함, 설사
- 건강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다고 느끼시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등으로 연락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를 받으세요.
- 아래 증상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 ☑ 나아지지 않고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함
- ☑ 사람을 못 알아보고 헛소리를 할 때
- ☑ 깨워 놓아도 자꾸 자려고 할 때
-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할 때
- ☞ 비상상황으로 119에 먼저 연락하시게 되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임을 꼭 밝히세요**

5] 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 재택치료자의 폐기물은 재택치료기간 동안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로 분리 하여 소독한 후 보관하며 **재택치료 종료 전까지 임의로 배출하지 말아 주세요**.
- 재택치료 종료 후, 다음과 같이 배출해 주세요.
 - (일반쓰레기)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상부·외부 소독 후, 이중 밀봉하여 배출
 -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종량제봉투(또는 전용용기)에 넣어 상부의부 소독 후 분리 배출
 - * 해당 지역 기존의 종량제 배출방식(봉투, RFID(전파식별), 칩·스티커 등)에 따라 배출
 - (재활용품) 표면소독 후 품목별 분리 배출

6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함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소아 재택치료 환자를 위한 안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옮기지 않도록 가능한 혼자 지내야 해요, 불편하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아프지 않게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당분간 집안이나 방안에서 지내며 몸이 아픈지 관찰하고 씩씩하게 지내는 것에 가족은 물론,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일등

- 혹시 여러분이 아프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어서 집 바깥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 여러분을 돌봐주는 정해진 어른 1명 외에는 혼자 있게 될 때가 많을 거예요.
- 집 안에서도 한 곳에만 머물러야 해요.
- 방문은 닫고 창문을 자주 열어줘야 해요. 식사할 때는 씩씩하게 혼자서 먹어야 하고, 혼자 먹을 수 없는 친구들은 어른이 도와주실 거예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해요. 가족들과 같은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난 후에는 잘 닦고 난 후 다른 가족들이 써야 해요
- 가족들과 예전보다는 말도 적게 하는 게 좋고, 뽀뽀나 안아주는 것도 당분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 혹시라도 병이 다른 가족에게 옮기지 않도록 그러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못을 하거나 안 예뻐서 그러는 건절대 아니랍니다. 가족들, 돌봐주시는 분들과 말을 하거나 잠깐 봐야 될 때는 전보다 좀 멀리 떨어져서만나야 해요. 서로 팔을 내밀어도 안 닿는 정도로요. 이때 여러분도 가족들도 마스크를 써야 해요.
- 여러분이 쓰는 그릇, 수건, 휴대전화 등은 다른 가족과 같이 사용하지 말고 혼자만 써야 합니다.
 - 옷이랑 이불도 어른들이 여러분 것만 따로 깨끗하게 빨아 주시고, 그릇도 깨끗하게 따로 잘 씻어주실 거예요.
-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어야 해요. 밥 먹기 전,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난 후
- 가족들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해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고. 기침. 재채기 후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여러분이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동안 아픈 곳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다 말씀드려야 해요.

- 아픈 곳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재고, 아픈 곳이 있는지 잘 관찰하고, 기침, 콧물, 숨이 차거나 다른 아픈 곳이 있으면 언제라도 어른들에게 얘기하세요.
- 아프게 되면 어떤 중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열이 나고, 기침이 나와요. 숨 쉬는 게 힘들어 질 수도 있어요. 몸이 떨리거나 아플 수도 있고, 머리나 목이 아프기도 해요. 그리고 냄새를 못 맡거나 예전에 알던 음식 맛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 ▶질병관리청 대표누리집(홈페이지) www.kdca.go.kr 알림·자료 홍보자료 카드뉴스



영·유아 및 소아 재택치료자를 돌보는 보호자 안내문(안)

<중앙방역대책본부·대한소아감염학회>

영 · 유이/소아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준수시항

[개인위생 관리]

- 감염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보호를 위해 가능한 보호자(1인)를 지정하고, 그 외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동거인은 최대한 채택치료 중인 아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보호자가 돌봄을 위한 공동격리를 원할 경우 영유아아동의 격리기간 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채택치료자를 돌볼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부인의 방문을 제한합니다.
- o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재택치료 중인 아이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ㅇ 보호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 올바른 손위생 방법에 따라 손씻기를 시행합니다.
- 특히, 다음의 경우 반드시 손씻기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와 접촉 전•후, 아이 주변의 물품이나 가구 등을 접촉한 후, 개인보호구를 탈의 후 즉시 손 씻기
- o 아이의 구토 분비물, 대소변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 등을 착용하여 이물 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다른 가족들과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세요.(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재택치료자의 식기류 등은 세척도 별도로 분리해서 합니다.
- ㅇ 확진된 영유아 및 소아의 목욕
-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목욕시켜야 합니다.
- 아이가 목욕한 공간은 알코올(70% 에탄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1,000 ppm 권장) 등 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청소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 ㅇ 재택치료 중인 아이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 체온은 아침, 저녁으로 2번 확인,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거나,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빠르게 쉬거나 수유 시 힘들어 하는 경우, 잘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 입술이 파래지거나 늘어지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연락하시고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 ㅇ 격리된 아이에 대한 마음건강지침
- 격리 중인 아이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격리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격리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무섭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기분이나 걱정을 표현하게 도와주세요.

- 격리 조치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정 확하면서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고,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선생님이나 친구와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심한 불안, 짜증, 행동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정신건강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수유 및 이유식관리]

- o 확진된 영아에게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 엄마도 코로나19 확진화자라면 직접 수유가 가능합니다
- 수유하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유축하여 수유하는 것을 권장하나, 직접 수유를 해야 한다면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 개인보호구: 마스크(KF94 동급 또는 그 이상), 장갑을 권장합니다.
- 수유를 함 때 손위생을 철저히 지키도록 합니다.

ㅇ 분유수유 및 이유식

- 분유는 젖병에 들어 있는 시판 액상분유나 일회용 젖병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회용이 아닌 일반 젖병을 사용할 경우, 젖병을 다른 식기류와 분리하여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합 니다
- 이유식은 1회분씩 용기에 소분해서 먹이고 나머지는 페기합니다.
- 식기류는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일회용이 아닌 식기류를 사용할 경우, 아이가 사용한 식기류는 따로 모아서 세정제와 온수로 세척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피합니다.

[소독 및 화경관리]▶

- ㅇ 재택치료 중인 아이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자주 화기를 시키십시오.
- o 가족들과 같은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아이가 사용 후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등 가정용소독제로 소독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o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소독제로 자주 닦아주 세요
- ㅇ 기저귀 또는 토사물의 관리
- 아이의 기저귀를 갈거나 토사물을 치울 때 손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장갑을 착용하고 기저귀를 갈아 주어야 합니다.
- 아이가 확진자 또는 접촉자인 경우 일반쓰레기는 소독한 후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소독 후 분리 보관합니다.
- 재택치료 종료 후 일반쓰레기는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이중밀봉·외부소독하여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도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하여 분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식 배변기를 사용하는 어린이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다른 형제들과 같이 쓰지 말고 혼자 사용해야 합니다.

ㅇ 잣난감 관리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난감 표면에 수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어 아이의 격리기간 동안 장난감은 최소 한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아이 이외의 다른 사람이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사용한 장난감은 격리해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입증된 소독제로 깨끗하게 소독을 한 후 사용합

니다. 가정용 락스(차아염소산나트룜)를 사용할 경우 소독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물로 깨끗이 세척 해야 합니다.

ㅇ 세탁이 가능한 직물은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

- 화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화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합니다.
- 온수 세탁이 가능한 직물이면 일반 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하고, 저온 세탁의 경우 세탁에 적합한 세계나 소독제를 선택합니다(제품사용서 참조).
- 매트리스나 카펫 등의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합 니다
- 아이가 사용한 세탁물의 양에 따라 유동적으로 세탁을 하거나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폐기를 하면 됩니다.

ㅇ 폐기물 관리

- 재택치료자의 폐기물은 재택치료기간 동안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하여 소독한 후 보관하며 재택치료 중료 전까지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 재택치료 종료 후, 다음과 같이 배출해 주세요.
- ① (일반쓰레기)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상부·외부 소독 후, 이중 밀봉하여 배출
- ②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종량제봉투(또는 전용용기)에 넣어 상부·외부 소독 후, 분리 배출 * 해당 지역 기존의 종량제 배출방식(봉투, RFID(전파식별), 칩·스티커 등)에 따라 배출
- ③ (재활용품) 표면소독 후 품목별 분리 배출
- 격리기간 동안 귀하의 아이에 대해 아래의 방법으로 발열, 증상을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 시 진료 또는 상담이 필요할 경우 동네 병의원의 전화상담·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사항은 하단의 QR코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상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집에 있는 체온계로 발열 체크 및 감기 증상이 발현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 어떤 중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발열(37.5 °C 이상), 권태감, 인후통,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로 연락하시고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급상황 과려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 ①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세터'에 문의하세요.
- ▶질병관리청 대표누리집(홈페이지) www.kdca.go.kr 알림·자료 법령·지침·서식 지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참조
 (소독제 희석액 준비, 개인보호구 착탈의, 손소독 방법, 환자이용공간 소독방법 등 참조)



서식5

코로나19 PCR 검사자 대면진료 안내문 (예시)

* 각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한 서식임



코로나19 PCR 검사자 대면진료 안내문(예시)

(지자체에 따라 일부 변경 사용 가능)

- ①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시 가까운 원스톱 진료기관에 방문 하셔서 대면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찰과 (필요한 경우) 약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외래진료의 경우 진료비(본인부담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 지역의 원스톱 진료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명	위치	전화번호	진료시간	24시간 진료
000병원	OO시 OO구 OO로 OO길 OO건물 1층	000-0000	월요일 09:00~18:00 화요일 09:00~18:00 수요일 09:00~18:00 목요일 09:00~18:00 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8:00 일요일 09:00~18:00	가능
OO의원				

- ※ 의료기관은 계속 추가 중이며, 포털사이트(네이버·카카오), 생활안전 지도 앱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 ② 검사 결과 확인 전 또는 결과가 음성이어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진료 당일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 팍스로비드는 다음의 경우 의료진 상담을 통해 처방 가능합니다.
- ①만 60세 이상 또는 ②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 신경발달장애)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 라게브리오는 다음의 경우 의료진 상담을 통해 처방 가능합니다.

①만 60세 이상 또는 ②만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 신경발달장애)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 ④ 야간 상담·처방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상황 및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119에 연락하시고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지역의 의료상담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명	위치	전화번호
OOO병원	00시 00구 00로 00길 00건물 1층	000-0000-0000
OO의원		

5 검사 후 주의사항 안내

- 1. 검사 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2. 귀가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자차를 이용하시고, 대중교통 이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3.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이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보건소